

『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2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12월 18일

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공무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 요구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비(국내 숙박비)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.
-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유도함으로서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, 숙박비 현실화에 따른 출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국내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(1야당) 상향 조정
 - 대 상 : 4급 이하 공무원(구미시 여비 조례 별표 1 제2호)
 - 상향조정 금액 : 당초 3만원 ⇒ 변경 4만원

라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법 제46조(실비보상 등) 제1항, 공무원 여비규정(대통령령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지방공무원법 제 64조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물가 상승을 반영한 적정 숙박비 지급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유도함.
- 공무 수행시 숙박비 현실화를 통해서 출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국내 숙박비 정액 지급단가(1야당) 상향 조정
- 대 상 : 4급 이하 공무원(구미시 여비 조례 별표 1 제2호)
- 상향조정 금액 : 당초 3만원 ⇒ 변경 4만원

○ 검토결과

-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유도하고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숙박비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,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예산 집행시 관련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숙박비의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